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 4차 개정 -

2023. 04. 18.

천안 성성4지구 A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목 차

제1장 총칙 -----	1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4
제3장 안전보건교육-----	10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	14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	17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	19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20
제8장 보칙 -----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주)동원개발 천안 성성4지구 A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이하 "현장"이라 칭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 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당해 현장에 적용한다.
2.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 임직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2. 안 전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사 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 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4. 안전관리

사업장 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업무를 말한다.

5. 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심한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작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재 해

사고의 최종결과로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7.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8. 불안정한 행동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9. 불안정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의 조건을 말한다.

10. 근로자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전 종업원을 말한다.

11. 협력업체

당사가 주관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업을 종속 관리 하에 실시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현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현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현장소장과 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휘하며 사고예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급인, 수급인의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현장내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여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관리감독자

공사관리의 관리감독자(공구장, 담당기사)는 소속 근로자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안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

5)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유해위험작업의 작업반장으로 구성되며 작업의 지휘감독 보호구 착용감독 등 작업전, 중, 후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6) 공구별 안전책임자

현장내 안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장의 전직원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활동을 수행 하여야 한다.

7) 전 근로자

현장내 전 근로자는 법 및 본 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기타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1. 노사간 협의체 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하도급업체 및 그의 수급인 전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과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협의 하여야 하며 격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노사간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2. 교육 및 점검

하도급 업체는 현장내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 하여서는 안되며,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하도급 업체는 지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작업을 위해 인.허가된 안전장구류를 자체 구입하여 작업개시전 취급 및 착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의 수급인 전원에게 지급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과 이와 관련되는 제반 규칙, 지침, 기타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

제7조(조직)

1. 법상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계선)조직과 스태프(참모)조직 및 기타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2. 현장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소장 - 공구장 - 담당기사 - 작업반장 - 근로자로 이루어지는 LINE조직으로 하며, 현장의 안전보건업무수행을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로 구성되는 LINE-STAFF 형으로 설치 운영한다.

3. 현장 안전관리조직도는 [별첨 1]과 같다.
4. 기타 안전활동상 조직으로 노사협의체, 자체소방대 등 기타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계자의 임명)

1. 현장의 안전보건조직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구장, 담당기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협력업체 현장소장), 협력업체직원(관리감독자), 유해위험작업의 작업반장(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을 임명한다.
2. 안전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정하는 자격자를 선임 임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선임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한다
3. 변경 시에도 2항과 동일하다.
4. 하도급 공사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당 사에 선임보고 한다.
6. 유해위험작업의 작업반장을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로 임명한 후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안전담당자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의 직무)

1. 공구장 및 담당기사, 협력업체 직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로서 당해 작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 5)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및 개선 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7) 그 밖의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1.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는 현장내 유해 위험작업반장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현장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5) 유해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별교육중 안전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2.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

- 1)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 2)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3) 1톤 이상의 크레인 또는 건설용 리프트를 5대 이상 사용 작업
- 4) 굴착깊이 2m이상 굴착공사
- 5)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 작업
- 6) 발파작업
- 7) 터널굴착작업
- 8) 산소결핍 위험 작업
- 9)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
- 10) 맨홀작업
- 11)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 12) 전압의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지도 조언하도록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1. 안전관리자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14조(보건관리자의 직무)

1. 법 제22조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2)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3)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5)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공구별 안전책임자의 직무)

1. 현장내 청결 및 정리정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 1) 동 또는 담당구역별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확인
 - 2) 담당구역별 안전시설물 설치여부(개구부 안전조치, 안전망 설치상태, 안전난간대 설치상태 등)
 - 3)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4)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제안
 - 5) 우수 근로자 포상시 우수근로자 및 우수업체 추천

2. 일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근로자의 직무)

1. 현장내 전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및 TBM활동 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의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노사협의체 구성)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의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3) 전체 사업의 대표자 (현장소장)

4) 안전관리자 1명

5) 보건관리자 1명

6)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2. 안전관리자는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 한다.

3. 사업주간 협의체(노사협의체) 회의결과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사업장내 게시판에 부착

2) 정기교육 또는 수시교육에 의한 방법

3) 기타 방법

4. 심의·의결 사항

1) 제15조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1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제4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5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제7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제15조1항 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제6호.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작업지휘자 배치)

1. 사업주는 해당 공사의 관리감독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한다.

-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 3) 중량물의 취급작업
- 4) 향타기, 향발기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하는 경우

2. 작업지휘자는 해당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을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시킨다.

제 3 장 안전·보건 교육

제19조(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은 현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안전보건 특별교육 및 정기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 한다

제20조(신규채용자 교육)

- 1. 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 및 근로자는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한다.
- 2. 신규채용시 교육은 시행규칙 제26조 3항 1호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이 실시 한다.
- 3. 신규채용자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설명
 - 2)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3)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4)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5)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6)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7)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10)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신규채용자 교육 실시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확인서명을 받아 신규채용자 교육일지를 작성한다.

제21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현장에 근무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 할 때에는 업무개시전 수행 할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한다.
2. 교육내용은 신규채용자 교육 내용과 동일하다.

제22조(안전보건 특별교육)

1. 교육은 시행규칙 제26조 3항 1호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실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작업시작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 1)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2) 밀폐된 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3) 목재가공용 기계(동급톱기계, 띠톱기계등)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5) 건설용 리프트 또는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6)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7)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 8)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인 되는 지반 굴착작업
 - 9)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 10)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11)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12)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
 - 13) 맨홀작업
 - 1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1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16)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17)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1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항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2. 교육방법은 안전관리지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배포한 교육자료 활용

제23조(근로자 정기안전교육)

- 1.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공종별 교육가능
- 2.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한다.
- 3. 교육강사는 외부초빙강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이 실시한다
- 4.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를 포함 한다.
 -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24조(관리감독자 교육)

- 1. 현장내 공구장, 기사, 협력업체직원등 관리감독자에게는 년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3)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제25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1.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통 : 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2)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3)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제26조(직무교육)

-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제27조(교육강사)

- 1.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강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기교육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외부강사
 - 2) 신규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4) 특별교육 : 경험이 많은 해당 공정의 관리감독자 또는 협력업체소장

제28조(교육장 설치)

- 1. 근로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전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장을 설치한다.
- 2. 안전교육장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치한다.

제29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 1.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를 회사 양식에 의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0조(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1. 당해공사 착공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개요
 - 2)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서류
 - 3) 현장 안전보건조직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5) 유해위험공중에 대한 안전작업방법
 -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활동은 회사 양식에 의거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제31조 (안전수칙)

작업장 내에는 안전관리상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안전수칙 및 각 공종별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설치한다

제32조 (작업중지_OUT SYSTEM)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포함)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 위반자 작업중지 대상

-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 미착용 작업
- 작업지휘자 미배치 작업(산업안전보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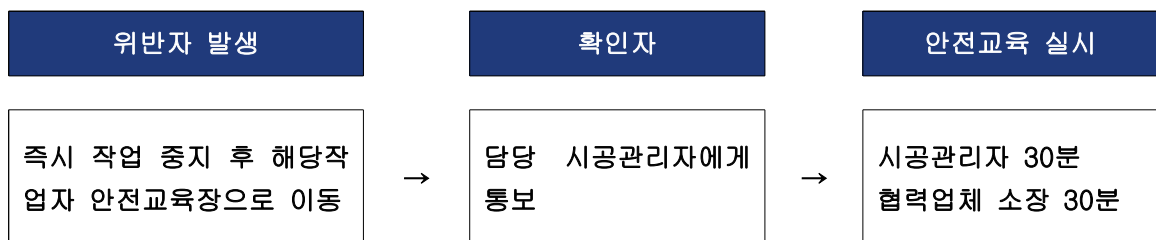
◆ 1차 : 위험작업자에 대한 구두경고 및 안전수칙 위반 확인서 발부 후 개인별 특별교육 실시

◆ 2차 : 해당공정 작업팀 전체 안전교육 실시, 시정지시서 발부

◆ 3차 : 작업중지 및 퇴출

● 1차 작업중지 절차

- 안전수칙 위반자 작업중지 후 현장 자체 특별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작업재개
- 현장자체교육 : 당사 30분 + 협력업체 30분 = 총 1시간으로 진행



● 2차 시정지시서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기한

- 안전교육 및 서류 미제출 : 1 일
- 안전시설물 개선 보고 : 5일
- 개선 미제출 시 시정지시서 재발급 및 해당업체 본사에 보고

3.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감독자 등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안전보건표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적재적소에 부착한다.

제34조 (방호조치)

1. 법 제98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유해, 위험기계기구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기 - 안정기

2) 교류아크용접기 - 자동 전격방지기

3) 크레인, 곤도라, 리프트 - 과부하 방지장치

4) 연삭기 - 덮개

5) 목재가공용 동근톱 -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6) 추락 및 붕괴등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비계파이프, 씨포트, 추락방망 등

2. 관리감독자는 협력업체의 방호조치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부별 안전담당자는 방호조치 관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5조 (방호조치 준수사항)

1. 작업자는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시킨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할 것.

2. 안전관리자는 1항 3호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안전검사)

1. 안전검사 대상 기계 기구는 다음과 같다
 - 1)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이 2톤 미만은 제외.
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 2)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 3)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2.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 1) 크레인 - 1회/6개월
 - 2) 리프트 - 1회/6개월
 - 3) 곤돌라 - 1회/6개월
3. 안전검사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37조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1.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굴삭기(타이어식),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1년
 - 2) 로더(타이어식), 지게차(1톤이상), 모터그레이더, 천공기(트럭적재식), 타워크레인
- 2년

제38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1.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은 최소량을 정하여 위험물 취급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물질 휴대금지 및 관계근로자 외에는 출입금지 조치한다.
2. 고압용기 보관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도 화기물질 휴대금지 및 관계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한다.

제39조 (자격 등에 대한 취업제한)

1. 법 제140조에 의거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지 아니한 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4) 인화성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하는 업무
 - 5)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 6) 철골구조물 및 배관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7)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
- 8)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 9)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0)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11)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
- 12)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작업

제40조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1. 매일 작업시작전 안전조회 및 T.B.M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TBM(Tool Box Meeting)은 10분 내외로 팀별 또는 업체별 관리자 및 근로자가 모여서 실시하며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을 재확인하고, 안전한 작업절차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는 위험예지활동이다.

가) TBM 실시 주요내용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한다.
 - 작업계획서(PTW포함), 위험성평가에 따른 작업내용별 위험요인 발굴 및 대책을 전달한다.
 - 동종 사고사례 등을 전달한다.
2. 매일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의 합동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3. 매월 위험성평가 회의 실시 후 노사합동점검(1회이상/2월) 실시 하여야 한다.
 4. 2개월 단위로 노사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협력업체별 안전모 색상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41조 (무재해 운동)

현장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42조 (안전작업허가제 _ Permit To Work 실시)

1. 수급인은 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현장 고위험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도급인에게 허가 또는 제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허가 대상작업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 깊이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 밀폐공간 작업
- 그 밖에 현장별 작업 전 사전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작업으로 분류된 공사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사용
- 철골 구조물 공사 및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주말·휴일 작업 중 실내마감을 제외한 모든 작업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3조 (건강진단의 구분)

1. 일반 건강진단
2. 배치전 건강진단
3. 특수 건강진단

제44조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1. 일반건강진단 -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년 1회)
2.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3.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2)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6조 (보호구 착용작업)

1.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여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3)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5)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보호장갑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7)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 작업: 귀마개, 귀덮개
 - 8) 특정화학물질 취급작업: 호흡용 보호구
 - 9) 기타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 10) 전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2. 모든 근로자는 작업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 외에 사용을 금지 한다.
 3. 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서명 날인 한다
 4. 지급된 보호구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개조,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5.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항상 사용가능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7조 보건수칙

1.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의 취급 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1.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법110조에 따라 각 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1) 제품명
 -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3)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 5) 물리.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 하여야 한다.

제49조 (물질안전보건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3) 취급상의 주의사항
 - 4) 적절한 보호구
 -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0조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1.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정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1조 (비상연락망)

1.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상 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52조 (사고조사 및 보고)

1.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시없이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2. 재해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고용노동관서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밖의 중요한 사항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제 7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53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1. **최초평가**는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것을 말하며, **공사 착공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정기평가로 **매년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3)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도입 또는 변경
 -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전달 및 기록 보존)

1. 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TBM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관리하도록 한다.
4.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55조 (포 상)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작업반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 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중에 포상을 상신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한다.
 - 1) 포상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성적(무재해)이 우수한 작업반 및 개인
 - (2)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 (3) 안전수칙 준수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4) 포상규모 : 100,000원 / 인 상당 상품

(5) 대상인원 : 공정별 예상 근로인원 감안 월별 포상계획 수립

(예, 출역인원 50명 / 1인)

2. 위험요인 신고포상

1) 신고방법 : 유선, 문자, 서면 가능하도록 현장내 절차 홍보(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

2) 신고포상품 : 문화상품권, 농산물상품권, 지역상품권

■ 신고포상 예)

30,000원	20,000원	10,000원
추락방지시설 없는 고소작업구간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시설 미설치 위험구간	안전화 미착용
음주작업	작업발판 미설치 작업	그라인더, 치핑작업, 용접/용단작업 보안경 미착용
2m이상 추락위험구간 비정상통로, 발판 사용	누전차단기 고장, 전선 충전부 노출, 접지 미연결	보행중, 장비 운전원 휴대폰 사용 및 흡연
2m이상 추락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임의해체	사다리 상부 미고정, 전도방지 미설치, 2인 1조 미실시	위험성평가 안전조치 미이행
화기작업 관리 미흡으로 발화 및 화재 발생	양중작업구간 하부 통제 미실시	장비 작업구간 주변통제 미실시

제56조 (벌 칩)

1. 제31조 (작업중지_OUT SYSTEM)에 따라 현장내에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작업분위기를 저해한 자는 현장에서 퇴출한다.

2. 개인보호구 미착용 또는 불안전행동으로 2회 이상 적발시 현장에서 퇴출한다.

제57조 (승인 및 협의)

1. 유해.위험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1) 교류아크용접기
- 2) 발전기
- 3) 절단기
- 4) 핸드 그라인더
- 5) 연삭기
- 6) 철근절단기, 절곡기
- 7) 목재가공용 톱
- 8) 기타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기구

제58조 (문서기록보존)

1.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건

1. 모바일 어플 : 현장통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3. 적용방식 : 2022년 12월 1일부터
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NO	관련 법령	현장통 체계	노동부 현장점검 대응
1	산안법 제3장 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 안전교육 및 안전작업 확인 ② 안전교육(관리감독자, 특별, 정기)	-
2	산안법 제3장 36조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및 점검
3	산안법 제3장 29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 위험신고 및 대처	-
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7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위험치위취 기능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 점검 조치
5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7항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급사이렌 기능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6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7항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퇴근 / 무사고, 사고 근로자 확인	재발방지대책 이행 및 재해발생 시 책임자 보고 절차
7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7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본사관리(본사 전달사항, 모니터링)	본사의 현장 정기점검 및 개선조치 체계
8	산안법 제164조 (서류의 보관)	모든자료 저장	-

제60조 (노사협의체회의 의결사항)

1.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2. 2022년 12월 14일 노사협의체회의 의결사항 중 흑한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매년 12.01 ~ 02. 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6.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9. 위험성평가 소요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흑한기 방한용품 : 핫팩(6), 발열조끼(3), 안전방한화(3)_안전인증서 첨부, 목토시(9), 귀마개(9), 귀덮개(9) 등)

3. 2023년 2월 15일 노사협의체회의 의결사항 중 근로자 전도방지 및 찰림방지용으로 각반(조임대) 사용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 위험성평가 소용비용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 (규정 제정 및 개정)

1. 본 규정 제정 및 개정은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현장 내 모든 임직원 및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규정은 현장내 보기 쉬운 곳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